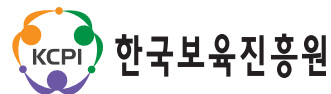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2025. 2.



CONTENTS

1

개정 평가제
개요

2

평가 운영
과정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2025. 2.**

1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2025. 2.**

개정 평가제 개요

어린이집 평가 사업 개요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

기본
방향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평가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 절차

평가대상 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결과발표

평가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어린이집 평가사업 개요

주요 경과

'05

평가인증제

신청 어린이집
대상 시행

'19. 6

평가제

모든 어린이집
대상 시행

'24. 1. 2

평가제 개편
법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

'24. 7. 3

개편 평가제
시행

평가제 성과

평가제 전환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평가 실시

※ 전체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유지 96.3%
(‘24년 12월말 기준)

보육서비스의 표준 정립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 평가결과 A, B등급 97.9%
(‘24년 12월말 기준)

평가제 한계

대부분 A, B등급으로
평가 변별력 약화

등급제로, 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

필요서류, 환경정비 등으로
보육교직원 업무부담 호소

시설설비 및 물적환경 등
구조적 질 평가 치중

2024 개정 평가제

“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편 ”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공포 ('24.1.2.) 및 시행 ('24.7.3.)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집중 평가



- 영유아 **웰빙, 발달** 중심의 평가지표로 개편
- 당일 **관찰과 면담** 위주로 평정방식 변경,
확인문서 최소화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방식 개선



- 평가결과 **등급제 폐지**
- **영역별 서술형** 평가결과서 제공

부모와 교직원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주도 평가 실시



- 현장평가 전 어린이집·보호자에 의한
자체평가 기간 확대
- 자체평가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용·부모용 안내자료 지원

평가제 개편 주요 내용

컨설팅 중심의 자율적 질 관리 체계 지원



- 연차별 **자율관리**
- 자율관리 **컨설팅**
- 어린이집 질 **개선·관리 지원**

운영체계 주요 특징비교

평가제

평가
지표

4영역, 18지표, 59항목

정량평가(N/Y)

구조적 지표(보육환경 등) > 과정적 지표(보육과정 등)

평가
절차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대상
통보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현장
평가종합평가,
결과발표한국보육
진흥원지자체,
어린이집한국보육
진흥원종합평가
위원회평가
결과

등급 제공 (A, B, C, D)

평가
주기

A,B 등급 : 3년 / C,D 등급 : 2년

평가 후
관리사후방문·확인점검
최하위등급조정

2024 개정 평가제

6영역, 15항목

정성평가(서술형)

구조적 지표(보육환경 등) < 과정적 지표(보육과정 등)

평가대상 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대상
통보자체
평가현장
평가종합평가,
결과발표한국보육
진흥원

어린이집

한국보육
진흥원종합평가
위원회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3년

연차별 자율관리 및 컨설팅
재평가

평가지표 주요 개정사항

✓ 전체 지표 개관

개정 전

4영역 18지표 59항목



개정 후

6영역 15항목

평가지표 전·후 비교

평가제	
영역(4개)	지표(18개)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 영유아 권리 존중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1-3 놀이 및 활동 지원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1-5 보육과정 평가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2-3 기관 운영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건강·안전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2 급·간식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관리
	3-4 등·하원의 안전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4 교직원	4-1 원장의 리더십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2024 개정 평가제	
영역(6개)	항목(15개)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 보육과정 평가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 건강 및 안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평가지표 주요 개정사항

과정적 질 지표 확대

개정 전 총 4개 영역 중 1개 영역

개정 후 총 6개 영역 중 4개 영역

보육서비스의 핵심요소인
보육과정 및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지표 및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평가의 신뢰성 제고

지표 전반에
'아동 권리 존중'의 취지·목적이 드러나도록 설정

과정적 질 지표 확대

평가제	
영역(4개)	지표(18개)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 영유아 권리 존중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1-3 놀이 및 활동 지원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1-5 보육과정 평가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2-3 기관 운영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건강·안전 (5개 지표)	
4 교직원 (4개 지표)	

2024 개정 평가제	
영역(6개)	항목(15개)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2-1 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 보육과정 평가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3개 항목)	
6 건강 및 안전 (4개 항목)	

평가지표 주요 개정사항

☑ **중복 지표 최소화** 개정 전 **법률 규정 사항 포함** → 개정 후 **상시적 관리 사항 위주로 최소화**

과정적 질 관련 지표 중심 개편,
지도·점검과 중복되는
구조적 질 관련 지표는 최소화하여
현장부담 완화

놀이터 설치 기준, 반편성 기준,
보수·복무규정 등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삭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실내 공간의 청결 및 안전,
급간식, 등하원 안전 등
6영역(건강 및 안전)에 존치

지표별 질 관리 제도

지표 구분	지표	질 관리 제도	담당
과정적 질 지표	보육과정-상호작용 중심	어린이집 평가	교육부·진흥원
구조적 질 지표	* 상시관리 지표 유지 설치·인가 등 법률 규정 사항	지도점검 등	지자체

평가지표 주요 개정사항

준비서류 간소화

개정 전

각 영역별 평가 문서 필요



개정 후

보육과정 관련 문서위주로 최소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라는 평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육과정과 관련된 문서 위주로 사전 준비서류 간소화

평가 문서

구분	운영	보육	교직원
개정	[2종]	[3종]	[2종]
	부모면담기록 운영계획 (연간보육계획 포함)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 보육일지 영유아평가 기록	상호작용 관찰지원 기록 교육관련 기록 (이수증 등)

※ 7종 이외에 기존 평가문서 삭제

평가지표 주요 개정사항

평가내용(세부 평정기준) 개정

개정 전

평가항목별 분절적 기준



개정 후

종합적·통합적 기준

과정적 질 지표 확대와 서술형 평가 결과 제공에 따라,
기존의 분절적 평정기준을 종합적이고 통합적 평정기준으로 개정

평가내용 개정방향 (예시)

평가제		
평가항목	평가내용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1.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Y / N
	2.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Y / N
	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Y / N
	4.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Y / N
	5.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Y /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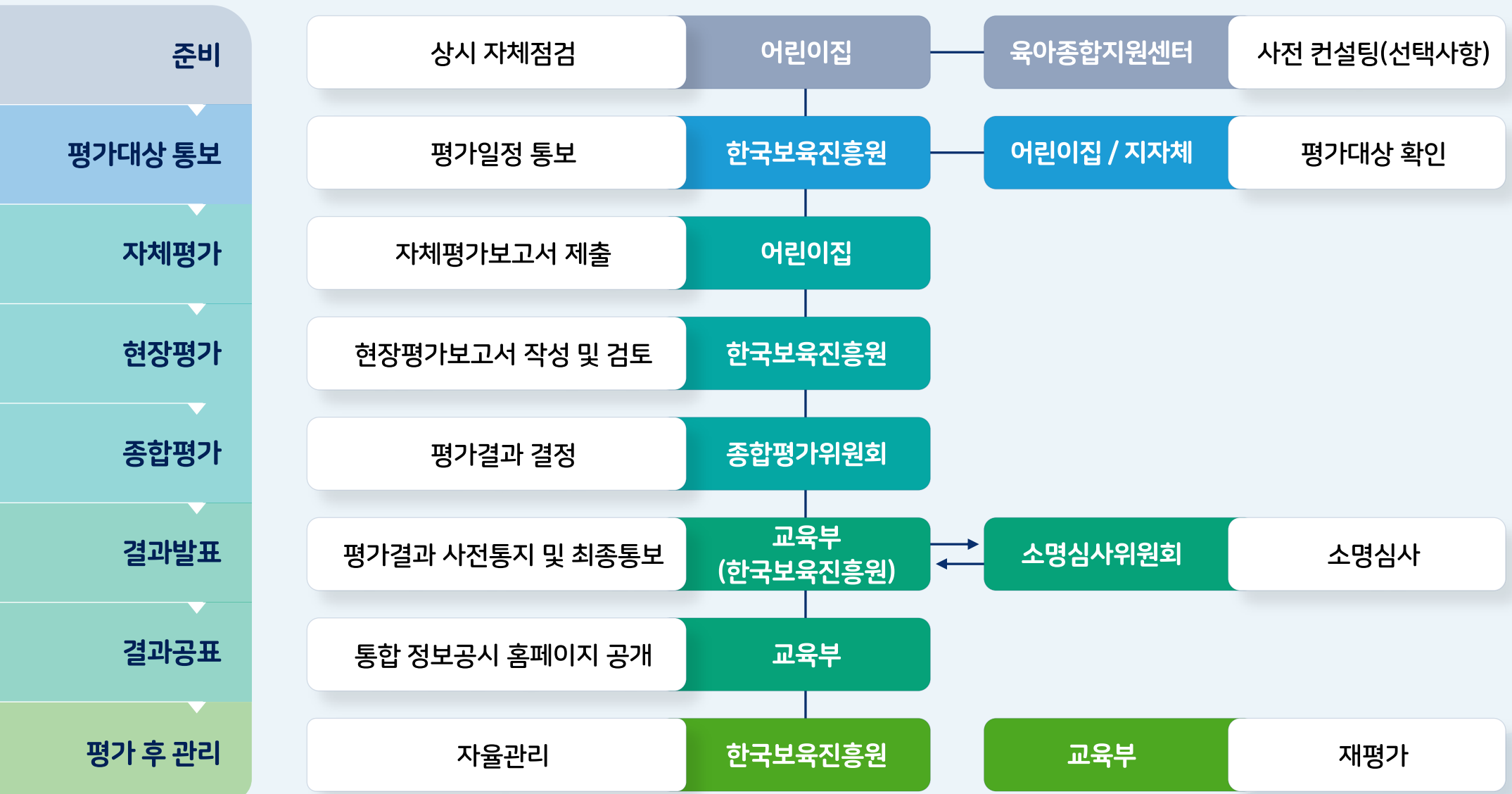
2024 개정 평가제	
평가내용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2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2025. 2.**

평가 운영 과정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 과정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 평가대상 선정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 어린이집

차기 평가 도래 시기에 맞추어
평가대상으로 선정

신규 개원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

휴지, 현원 0명으로 차기 평가 시기가 경과한 어린이집은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

단,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기존의 평가결과와 평가주기 유지

⚠️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거부, 기피 또는 방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평가대상 통보

1 대상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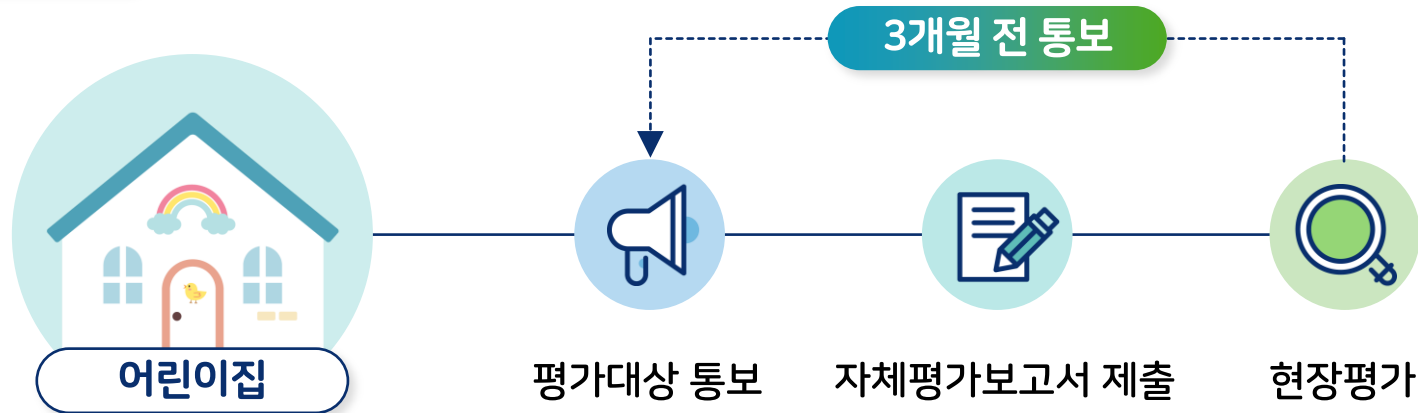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 평가대상 통보

통보
시기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전 실시통보
절차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전자문서통지 동의서' 제출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평가대상 통보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 평가시기 조정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당초 기수 기준 1~3개월 후로 평가시기 조정 가능

신청기간

평가대상 통보 월 말일까지
조정신청 가능

신청방법

평가대상 통보월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조정신청

결과확인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조정사유 최종 확인 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

인정 사유

자체평가월로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함,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보육교직원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보육교직원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어린이집 평가 과정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자체평가 절차



※ 대상통보월 익월부터 2개월간 실시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원장과 원아 부모만으로 2인 또는 3인 구성 가능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은 '자체평가 안내서'에 수록된 지표를 살펴보고, 평가항목별로 어린이집 수준 평가
-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자체평가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평가항목별 척도

- 평가항목별 1~5점 척도로 도달 수준 평가



평가 항목	평가내용	어린이집의 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또한,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1	2	3	4	5

부모 종합의견 작성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평소 경험하는 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하여 기술
- 학부모의 의견을 원장이 직접 입력



부모 종합의견



우리 어린이집은 가정과 항상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장점임. 아이 등하원 시킬 때 교실 앞에서 담임 선생님과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놀이를 했는지 알림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줌.

또한,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함. 이러한 노력으로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음

부모용 체크리스트 활용

- 자체평가 안내서 활용
- 부모의 눈높이로 평가 가능한 부모용 체크리스트(별도 질문지)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놀이하고 있나요?	☐	☐	☐	☐	☐
	•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는 아이들의 관심사, 놀이, 건강이나 기분 상태, 날씨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되나요? ※ 예: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할 계획이었으나, 아이들이 공원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산책 활동으로 변경함	☐	☐	☐	☐	☐
	•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는 이를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하나요? ※ 예: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할 계획이었으나, 아이들이 공원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산책 활동으로 변경함	☐	☐	☐	☐	☐

어린이집 평가 과정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현장평가

현장평가
일정확인

-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완료한 어린이집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현장평가 주간 통보



현장평가 직전 주에
현장평가일 통보

확인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확인 기간

평가 주간 현장평가월 1주일 전
평가일 현장평가 주간 직전 주



⚠ 고지된 현장평가일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보수교육, 상(喪), 휴원령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주간·일자 조정 가능

⚠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영유아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 가능, 현장평가 전 '현원 0명'으로 확인될 경우 과정 중단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현장평가
실시

-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현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실시
※ 평가대상 통보월 말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



- 현장평가자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9:00 ~ 09:30,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 15:30 ~ 16:30
※ 필요 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평가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사항,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 후 현장평가 시작



평가과정 중 '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반영,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현장평가
실시

-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 반(영아반, 유아반 각 1개 반씩 포함)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인가공간)를 관찰

※영아반 또는 유아반만 있는 경우 그 중 2개 반을 선정하여 진행

기록(문서) 확인 기간

-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기록(문서) 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

보육일지,
월간(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

그 외의 기록
(문서)

-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예: 현장평가월이 11월인 경우
보육일지, 월간(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은
10월 1일부터 현장평가 전일까지
- 1년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표의 경우
당해 연도 및 전년도 기록 확인

- 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
 -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지원 활동 불가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일상적 일과 진행 및 출석 기준 충족

-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장평가 당일에는 영유아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사유 확인 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
(단, 전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필요 서류

- 1 **원아명단** : 평가 당일,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 2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 : 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 3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 : 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 4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경력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 5 **평가지표 관련 문서** :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 ①, ②, ③은 현장평가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현장평가 후 상호 확인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 원장과 현장평가자는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서명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항목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

※ PC고장,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진행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어린이집 평가 과정



① 대상통보

② 자체평가

③ 현장평가

④ 종합평가

⑤ 결과발표

종합평가
진행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 진행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자료 검토 후 영역별 평가결과서 및 평가주기 확정

평가과정에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심의 후 평가결과서에 관련 내용 반영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기타 교육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① 대상통보

② 자체평가

③ 현장평가

④ 종합평가

⑤ 결과발표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평가대상 통보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 사실 통보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 통보한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평가결과서 반영 또는 평가주기 조정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 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②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③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어 수사, 재판 계류 중으로
관련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면직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평가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

인가변동사항 발생

- ①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②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③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현원 0명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

어린이집 평가 과정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평가결과
사전통지

- 어린이집 평가결과 사전통지는 매월 말일 경*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

* 현장평가월로부터 2개월 후

평가결과 사전통지 전

사전통지 전
어린이집 정보 확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어린이집 정보는 어린이집 관리 및 결과발표, 평가 후 관리에 활용되므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함

변동사항 확인서 제출 및
평가제도 관련 설문 참여

어린이집에서는 변동사항 확인서 및 평가제도 관련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함

평가결과 사전통지서 확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소명

-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
 - 평가결과 사전통지 익월 15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 가능

소명 절차

소명신청

사실조사

소명심사
위원회
개최의결
(인정 / 불인정)결과통보
(최종통보) 및
후속조치

소명 결과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평가결과 최종통보

- 평가결과 사전통지 익월 말일 경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평가결과 최종통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 평가주기는 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월 1일부터 시작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결과공표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공표 시기

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일

공표 내용

평가상태, 평가결과, 평가이력

어린이집 평가 상태

구분	공표 내용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평가제 개편 시행('24.7.3.) 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평가완료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	평가 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법30조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법30조4항에 따른 재평가 중

※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음

1 대상통보

2 자체평가

3 현장평가

4 종합평가

5 결과발표

결과공표

평가결과서 예시 - 구체적 서술형 제공

영유아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평가내용

OO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정해진 일과에 따라 운영하되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 건강상태, 날씨 등을 고려해 일과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등하원, 급간식, 배변, 낮잠(휴식) 시간에도 아이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급간식 시간에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해 주고, 천천히 먹는 아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등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영유아

6

건강 및 안전

평가내용

OO 어린이집은 놀이기구, 놀잇감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시 지침 등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2회, 부모들이 직접 점검하는 '자체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급간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와 조리실 위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 후 관리





연차별 자율관리



- ✓ 어린이집은 평가 후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연차별 자율관리 실시

대상

평가를 받은 모든 어린이집(당해 연도 평가대상 어린이집 제외)

내용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진단도구(조직운영, 보육과정 등)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스스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개선점 도출 및 '계획-실천-평가-환류'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

- '어린이집 자율관리 홈페이지'(<https://www.kcpi.or.kr/step/>)에서 진단 및 컨설팅 신청 가능

※ 자율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 컨설팅' 신청

자율관리 컨설팅

- ✓ 진단도구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의 자율적 질 개선 지원

대상 컨설팅 신청 어린이집

내용 어린이집 자율관리를 위한 개선점 도출 및 이행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맞춤 지원(컨설팅) 제공

- 사전교육 및 안내, 현장방문, 온라인 컨설팅 등을 통해 진행

어린이집 질 개선·관리 지원

- ✓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맞춤 교육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

-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재평가 진행 절차 및 평가지표는 본 평가와 동일함

※ 재평가 진행 중인 경우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으로 공시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재평가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기타 교육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주기 조정관리



-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재평가 이외에
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음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행정처분 대상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사유

- 대표자 또는 원장이 평가동의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등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평가에 관련된 서류(자체평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의 출입을 막거나, 현장평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평가 직원(현장평가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처리절차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 교육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 보고

현장평가 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해 현장평가자가 확인서 작성



대표자 또는 원장에게 서명·확인



교육부에 보고

현장평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평가거부 사유를 현장평가자가 직접 작성



현장평가자가 서명하고 종료



교육부에 보고

-  교육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를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추후 해당 어린이집을 평가대상으로 통보



근거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9898호, '24.1.2) 부칙 제3조

✓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아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으로 봄

✓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 발생 시, 개정법을 적용하여 재평가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



감사합니다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2025. 2.**

